

사단법인 과학키움 정관 및 규정집

ISP

ISP 사단법인 과학키움
노벨상후보발굴위원회
Initiative for Science Promotion

목 차

정 관

1. 제 1 장 총칙(1~5 조)-----	1
2. 제 2 장 회원(6~11 조)-----	2
3. 제 3 장 임원(12~17 조)-----	3
4. 제 4 장 총회(18~23 조)-----	4
5. 제 5 장 이사회(24~27 조)-----	6
6. 제 6 장 재산 및 회계(28~30 조)-----	7
7. 제 7 장 사무부서(사무국)(31 조~36 조)-----	8
부칙(1~4 조)-----	9
보칙(5~8 조)-----	9

규 정

1. 기획관리위원회 규정(1~12 조)-----	11
2. 정책위원회 규정(1~10 조)-----	14
3. 대외협력위원회 규정(1~10 조)-----	16
4. 홍보위원회 규정(1~10 조)-----	18
5. 미래교육위원회 규정(1~10 조)-----	20
6. 회원관리위원회 규정(1~12 조)-----	22
7. 노벨상후보발굴위원회 규정(1~17 조)-----	24
8. 사무부서(사무국) 운영 규정(1~8 조)-----	27
9. 편집·출판위원회 규정(1~10 조) -----	29
10. 회원의 회비에 관한 규정(1~8 조)-----	31
11. 후원회의 회비에 관한 규정(1~8 조)-----	33

홈페이지 규정 및 규칙

1. 홈페이지 관리 규정(1~8 조)-----	35
2. 홈페이지 운영 규칙(1~6 조)-----	37

사단법인 과학기움 정관

2023. 3. 25. 제정
2023. 6. 29. 승인
2023. 7. 20. 시행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과학기움(이하 본회라 약칭)이라 한다. 그리고 외국에 대하여는 Initiative for Science Promotion (약칭: ISP)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과학기술력을 증진시키고 한국을 빛낼 과학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의 과학기술 인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국가의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인 육성
- ② 우수과학자, 노벨상 후보의 발굴 및 지원 사업
- ③ 과학포럼, 노벨상 관련 강연, 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
- ④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와 지부】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기획관리위원회, 정책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편집출판위원회, 후원회, 노벨상후보발굴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과 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① 정 회 원: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낸 회원
- ②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 ③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술기관 및 기업체
- ④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 ⑤ 학생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재학생

제8조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사회 각계 지도급 인사 중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회 장 1인
부회장 7인 이내
감 사 2인
이 사 10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 해임 및 선임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장, 회장,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③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이사장, 회장, 감사,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해임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이사장, 회장, 부회장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이사회 또는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이사장 및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이사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대행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 ② 본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④ 제③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본회의 재산 또는 이사회 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시에 통고한 안건 이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이사회를 거친 다음 사항을 인준 승인한다.

- ①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 ② 정관 개정에 관한 승인
- ③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⑤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본회 회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장과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③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의 승인
- ⑤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 【이사회 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년 간 2회(예산, 결산)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사전 통지된 회의 안건에 한하여 심의한다. 다만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이사회 의결은 서면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인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7조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정은 기본재산, 회원과 이사의 회비, 기부금 및 협찬금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 및 이사의 회비
- ②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이익
- ③ 기부금과 협찬금
- ④ 기타 수입

제2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며, 매년 회계 감사를 시행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30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 ②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회장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집행내용을 매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사무부서(사무국)

제31조 【사무부서】 본회의 사무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부서(사무국)을 둔다.

제32조 【목적】 본 사무국은 (사)과학기움의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무체계를 갖추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3조 【업무】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행정을 체계화하고, 본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안정적으로 사무업무를 뒷받침하고 지원한다.

제34조 【사무국의 구성】 본회는 사무국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사무총장 1인

총무이사 1인

사무업무 직원 2인

제35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와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무총장의 임기는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총무이사의 임기는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사무업무 직원의 채용과 임기는 공개채용 계약제로 한다.

제36조 【사무총장, 총무이사, 직원의 업무】

- ① 사무총장은 사무본부를 관장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
- ② 총무이사는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사무업무 직원은 (사)과학기움의 제반 행정업무, 회계업무관리 및 각종 위원회와 목적사업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부칙

제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이사 만장일치의 찬성 의결과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2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3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칙

제5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발기인 대표】

본회 과학기움의 정관을 이사회와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과학기움을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기로 결의한다.

제7조 【시행 공지】 본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받은 날부터 공지 시행한다.

제8조 【발기인 기명날인】

본회를 과학기움의 정관을 이사회와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과학기움을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규정)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기움 기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기획 재정과 회원관리 위한 규범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실】 본 위원회는 (사)과학기움 내에 둔다.

제4조 【기획 재정】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재정을 기획하고, 회원을 유치 관리하여 본회를 지원한다.

제5조 【재정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과 재정 관리를 위한 회원을 둔다.

- ① 정 회원: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낸 자
- ②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개인, 단체 및 각종 기관
- ③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
- ④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 ⑤ 학생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재학생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관에 제시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위원의 정수】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총무간사 1인

제8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선임방법】

- ① 위원장과 위원, 총무간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③ 총무간사는 위원장이 선임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제10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과 총무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는 본회의 회원 및 재정계획,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회비책정과 기금모금을 수행한다.

제11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보칙】

- 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규정 추가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행한다.

정책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기움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규범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는 (사)과학기움 내에 둔다.

제4조 【정책 방향】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여 본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총무간사 1인

제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선임방법】

- ① 위원장과 위원, 총무간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③ 총무간사는 위원장이 선임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제8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과 총무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는 과학기움 활동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정책수립을 하고, 목적사업에 관한 정책제안을 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보칙】

- 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규정 추가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행한다.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기움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과학기움의 대외협력 업무에 필요한 일을 개발 관리하고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사)과학기움 내에 둔다.

제4조 【대외협력홍보】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대외협력을 체결하고 정책을 기획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총무간사 1인

제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선임방법】

- ① 위원장과 위원, 총무간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③ 총무간사는 위원장이 선임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제8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과 총무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는 대내외 언론홍보, 노벨재단과의 협조 및 홍보 업무,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학자와의 상호협력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보칙】

- 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규정 추가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행한다.

홍보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키움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과학키움의 홍보업무에 필요한 일을 개발 관리하고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사)과학키움 내에 둔다.

제4조 【대외협력홍보】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홍보를 기획하여 수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총무간사 1인

제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선임방법】

- ① 위원장과 위원, 총무간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③ 총무간사는 위원장이 선임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제8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과 총무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는 대내외 언론홍보, 노벨재단과의 협조 및 홍보 업무,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학자와의 상호협력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보칙】

- 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규정 추가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행한다.

미래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키움 미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는 (사)과학키움 내에 둔다.

제4조 【미래교육】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방향과 정책을 기획하고 교재를 개발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총무간사 1인

제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선임방법】

- ① 위원장과 위원, 총무간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③ 총무간사는 위원장이 선임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제8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과 총무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는 차세대 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과 강연계획 수립, 교육을 위한 컬리큘럼 및 교재 등을 개발 하여 지원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보칙】

- 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규정 추가는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행한다.

회원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키움 회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과학키움 회원관리를 위한 원칙과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는 (사)과학키움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과 위원을 둔다.

- ① 정 회원: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낸 자
- ②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개인, 단체 및 각종기관
- ③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술단체 및 기업체
- ④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⑤ 학생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재학생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원의 연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정수】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에 분야별로 다음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총무간사 1인

제8조 【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선임방법】

- ① 위원장과 위원, 총무간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③ 총무간사는 위원장이 선임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제10조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과 총무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는 회원의 모집, 관리 및 참여를 위한 독려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제11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보칙】

- 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규정 추가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노벨상후보발굴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기움 노벨상후보발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노벨상 수상후보 발굴을 위한 원칙과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위원회는 사단법인 과학기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노벨상 수상후보의 발굴 및 지원 사업
- ② 노벨상 관련 자료수집, 수상후보 선정기준 및 공청회 개최
- ③ 노벨상 수상후보 육성 및 관련 정책 건의와 자문
- ④ 기타 이 규정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와 부서】 본 위원회는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야별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 자격】 본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한 회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종류】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각 분과에 5인 내외의 발굴위원을 둔다.

- ① **물리학상** 분야후보 발굴위원 : 노벨상 관련 물리학분야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자
- ② **화학상** 분야후보 발굴위원 : 노벨상 관련 화학분야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자
- ③ **생리학·의학상** 분야후보 발굴위원 : 노벨상 관련 생리·의학 분야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자

제8조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 본 위원회 각 분과 발굴위원의 선정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인증을 거쳐 위촉한다.

제9조 【심사절차 규정】 본 위원회의 노벨과학상 수상후보 발굴을 위한 제 규정은 매년 발굴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탈퇴】 본 위원회 위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제명】 본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본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정수】 본 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분야별로 다음의 위원을 둔다.

- 분야별 위원장 1인
- 분야별 위원 3인 내외
- 분야별 총무간사 1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장, 분야별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의 선임방법】

- ①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② 분야별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15조 【위원장 및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분야별 위원장, 위원, 총무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보칙】

- ① 각 위원회의 필요한 규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행한다.

사무부서(사무국) 운영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키움의 사무부서(사무국)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과학키움의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무체계를 갖추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과학키움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행정을 체계화하고 본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사무업무를 뒷받침하고 지원한다.

제5조 【사무본부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의 본부 임원을 둔다.

본 부 장 1인

총무간사 1인

기획재무간사 1인

사무 업무담당 직원 2인

제6조 【임원의 임기】

- ① 사무총장의 임기는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총무이사와 업무담당 직원의 임기는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업무지원 담당직원의 채용과 임기는 공개채용 계약제로 한다.

제7조 【사무총장의 직무】

- ① 사무총장은 사무본부를 관장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
- ② 총무이사, 업무지원 담당직원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이사장과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사무총장, 총무이사, 업무지원 담당직원은 과학키움의 제반 행정 업무, 회계업무관리, 각종 위원회와 목적사업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제8조 【보칙】

- ① 사무본부에서 필요한 규정 추가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행한다.

편집·출판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키움 편집·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과학키움의 편집·출판에 관한 업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사)과학키움 내에 둔다.

제4조 **【편집·출판 관리】**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편집·출판 업무를 관장하고 본회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대내외 편집·출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장과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본 편집·출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에 분야별로 다음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

총무간사(편집) 1인

재무간사(출판) 1인

제6조 **【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임방법】**

-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총무간사와 재무간사는 위원장이 선임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제8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편집·출판에 관한 회무를 총괄하며 결과물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부위원장, 위원, 총무간사, 재무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보칙】

- 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규정 추가는 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정하여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회원의 회비에 관한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기술움 회원과 이사의 회비에 관한 규정이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과학기술움 회원과 본회 이사의 회비 관리를 위한 원칙과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비 규정】 본 규정은 (사)과학기술움 내에 둔다.

제4조 【회원 자격】 회원과 이사는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회원과 이사의 종류】 다음과 같은 회원과 이사를 둔다.

- ① 정회원: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낸 자
- ② 학생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재학생
- ③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개인 및 각종 기관
- ④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술단체 및 기업체
- ⑤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⑥ 등기이사: 이사로서 사단법인 과학기술움에 등재된 이사
- ⑦ 이사: 이사로서 사단법인 과학기술움에 소속된 이사

제6조 【회원과 이사의 권리와 의무】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이사는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원과 이사의 연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회비】 정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사의 연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의 회비는 후원회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보칙】

- ① 본회에서 필요한 회비에 관한 규정 추가는 이사회 3분의2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이사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후원회의 회비에 관한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과학기움 후원회의 회비와 후원에 관한 관리규정이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과학기움 후원회의 회비와 후원회의 관리를 위한 원칙과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사)과학기움 내에 둔다.

제4조 **【후원회원 자격】** 후원회 회원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후원위원의 종류】** 다음과 같은 후원 회원을 둔다.

- ①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개인 및 각종 단체
- ②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술단체 및 기업체
- ③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④ **후원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개인 및 각종 단체
- ⑤ **고문·자문위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 **【후원회원과 위원의 권리와 의무】**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위원은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회 회원과 위원의 연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후원 연회비】** 특별회원, 단체회원, 후원회원의 연회비는 협의에 따라 액수를 정한다. 그리고 명예회원, 고문·자문위원의 연회비는 자의로 정하여 후원한다. 학생회원의 회비는 연회비 없이 행사비에 따른다.

제8조 【보칙】

- ① 본회에서 필요한 회비에 관한 규정 추가는 이사회 3분의2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이사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홈페이지 관리 규정 및 운영 규칙)

홈페이지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과학키움 (이하 법인이라 함)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 보수함으로써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 법인의 사업 내용을 홍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대상】

- ① 본 법인의 도메인(Domain) 내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홈페이지 대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법인의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상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제3조 【관리 범위】

- ① 본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정보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법인홍보 관련 사항
 2. 법인의 각종 행사 안내 및 공지 사항
 3. 각종 규정
 4. 법인 내 구성원 정보
 5. 구성원들이 제출한 학술 관련 논문이나 정보 및 학술 관련 서비스 정보
 6. 홈페이지 상의 문의 사항 또는 민원사항 처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단, 법인의 정책에 반하는 자료나 법 또는 규정으로 정해 보호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② 홈페이지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기능 개선과 정보를 갱신하도록 한다.

- ③ 홈페이지 개설 등록과 폐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는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회장, 총무이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단, 사무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전담관리팀 구성】

- ① 홈페이지 전담관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전담관리팀은 팀장 1인(총무이사)과 실무자 1인(사무국장)으로 하되 추후에 법인의 사무체계가 안정되면, 관리팀을 새로 구성하고 인원을 보강 증원한다.

제6조 【회의】 정보수집, 정보교환 및 각종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위원회는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갖게 되며, 필요시에는 팀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처리 절차】

- ① 법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기능개선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하되 총무이사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실행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총무이사가 직접 실행할 수 있다.
- ② 공지사항 및 안내 등 게시판에 등재되는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무이사의 관장 하에 총무이사나 실무자(사무국장)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홈페이지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과학키움(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정보수 집을 통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법인 홈페이지 자료의 입력, 수정 및 삭제와 관련된 업무와 웹서버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진 법인 관련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 ② ‘웹서버’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 ③ ‘백업’이라 함은 프로그램 및 자료 등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분(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④ ‘침입차단시스템’이라 함은 외부 불법 사용자의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중요 기밀과 정보를 보호하고, 인터넷주소(IP)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전자보안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

제4조 【홈페이지 관리 체계】

-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침입차단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수집, 신규 입력의 요청, 수록된 자료의 수정 및 삭제
 2.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 점검
 3. 웹서버 및 침입차단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4. 개발 프로그래밍, 웹서버 및 침입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5.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6. 장애 이력 사항의 유지 및 분석
 7. 사용자 교육 지원
 8. 백업 및 인터넷 통신회선 관리
- ③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와 관련된 정보내용 변경 등을 법인의 관계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장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5조 【비밀번호 관리】

- ① 비밀번호는 유추될 수 없도록 6자 이상으로 하되 문자와 숫자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3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용자는 본인의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노출에 따른 제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ISP 사단 과학기움
법인 법인 노벨상후보발굴위원회
Initiative for Science Promotion